

1. 개정이유

범부처 인증제도 개선방안에 따라 「문화산업진흥 기본법」에서 위임 근거가 없어진 문화상품 품질인증 관련 조항을 삭제함

「문화산업진흥 기본법」 제10조의3 및 제11조의3 신설로 방송영상독립제작사(이하 “독립제작사”) 신고 및 변경신고, 영업의 승계 신고 등의 의무화 된 사안을 반영하여 신고서 제출 서류들을 정비함

2. 주요내용

가. 문화상품 품질인증기관 지정신청 절차 조항(제5조의2) 및 관련 별표 및 별지 서식을 삭제함

나. 「문화산업진흥 기본법」 제11조의3에 따라 방송영상독립제작사 영업의 승계신고 의무가 신설됨에 따라, 신고서 서식 근거 및 별지를 신설함(제5조제6항, 별지 제2호의5)

다. 「문화산업진흥 기본법」 제10조의3 개정으로 독립제작사의 신고가 의무화됨에 따라 기존 신고서류 및 신고관리 대장에서 미신고 영업을 전제하는 최근 3년간 매출액 등의 항목을 삭제함(별지 제2호서식·별지 제2호의3 서식)

라. 연구개발 기본법인 연구개발혁신법에 맞게 용어 정비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관계기관 협의 예정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 예정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예정

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⑥ 영 제12조의3의제1항에 따른 방송영상독립제작사 지위승계 신고서는 별지 제2호의5서식과 같다.

제5조의2를 삭제한다.

제11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영 제25조의3제3항 후단에 따라 기술개발사업실시기관”을 “영 제25조의3제2항에 따라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호 중 “같다)부터 1년 이내에 기술료”를 “같다) 이전에 기술료 등의”로 하며, 같은 조 제2호 중 “잔액을”을 “등의 잔액을”로 한다.

별표 1을 삭제한다.

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2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.

별지 제2호의5서식을 삭제한다.

별지 제2호의5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.

이 규칙은 2021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.

방송영상독립제작사 (변경)신고서

(앞쪽)

접수번호		접수일자		처리기간	신 고 : 5일 변경신고 : 3일
제작사	명 칭			사업자등록번호	
	주 소			전화번호	
대표자	성명			생년월일	
	주 소			전화번호	
시설 및 기자재 보유 현황					
주요 제작 장르					
※다음 사항은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.					
신고번호				신고 연월일	
변경사항	변경 전				
	변경 후				

「문화산업진흥 기본법」 제2조제20호,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·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·제3항에 따라 방송영상독립제작사를 ([]신고, []변경신고)합니다.

년 월 일

신고인

(서명 또는 인)

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하

첨부서류	뒤쪽 참조
------	-------

210mm×297mm[백상지 80g/㎡(재활용품)]

신고인 제출서류	신고의 경우	1. <삭 제> 2. 방송프로그램의 제작에 대한 계획서 또는 그 요약서 1부	수수료 없 음
	변경신고의 경우	방송영상독립제작사 신고증 1부	
담당 공무원 확인사항	사업자등록증		

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

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 *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
신고인

(서명 또는 인)

처리절차

신고서 작성	➔	접 수	➔	검토·확인	➔	결 재	➔	신고증 발급
신고인		처 리 기 관 (문화체육관광부)		처 리 기 관 (문화체육관광부)		처 리 기 관 (문화체육관광부)		

방송영상독립제작사 신고대장

신고 번호	상호명	대표자	생년월일	소재지	전화 번호	기자재 보유 현황	신고일 (설립일)	장르	사업자 등록번호	폐업 시 폐업일

210mm×297mm[백상지 120g/㎡]

방송영상독립제작사 지위승계 신고서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	즉시
양도인	성명(대표자)	생년월일 (외국인등록번호)	
	주소	전화번호	
양수인	성명(대표자)	생년월일 (외국인등록번호)	
	주소	전화번호	

양도인(피합병법인)의 상호			
양도인(피합병법인)의 신고번호			
주 영업장의 소재지		전화번호	
양수인(합병법인)이 사용할 상호(명칭)			
사업양도(지위승계)의 사유 및 대상			
사업양도(지위승계) 연월일	년	월	일

「문화산업진흥 기본법」 제11조의3,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양수(지위승계)를 신고합니다.

년 월 일

신고인 양도인(피합병 법인)

(서명 또는 인)

양수인(합병 법인)

(서명 또는 인)

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하

신고인(대표자) 제출서류	1.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자 또는 다른 법인과 합병한 법인의 독립제작사 신고증 2. 지위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가. 양도: 양도·양수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, 양도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의 사본 1부(양도·양수인이 함께 방문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외합니다) 나. 상속: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 등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다. 법인 합병: 법인 합병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	수수료 없음
	담당 공무원 확인사항	

처리절차

신고서 작성 신고인	→	접 수 처리기관 (문화체육관광부)	→	검토·확인 처리기관 (문화체육관광부)	→	결 재 처리기관 (문화체육관광부)	→	수 리
---------------	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	-----

210mm×297mm[백상지 80g/㎡]

행정처분등의 내용 고지 및 가중처분 대상업소 확인서

1. 양도인은 최근 1년 이내에 다음과 같이 「문화산업진흥 기본법」 제58조의2,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 6 및 별표 1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 및 진행 중인 행정제재처분 절차가 있는지 여부를 양수인에게 알려주었습니다.

가. 최근 1년 이내에 양도인이 받은 행정처분

처분일	행정처분 내용(근거법률 포함)

나. 행정제재처분 절차 진행사항

적발일	「문화산업진흥 기본법」 위반내용	진행중인 내용

비고

- 1) 최근 1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가목 표의 처분일란에 “해당없음”이라고 적습니다.
 - 2) 진행 중인 행정제재처분 절차가 없는 경우에는 나목 표의 적발일란에 “해당없음”이라고 적습니다.
 - 3) 담당 공무원은 위 행정처분의 내용을 별지 제19호서식의 행정처분기록대장과 대조하여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, 일치하지 아니하거나 누락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양도인 및 양수인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위 기록사항을 보완하도록 하여야 합니다.
2. 양수인은 위 행정처분에서 지정된 기간 내에 처분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거나, 행정처분을 받은 위반사항으로 다시 적발된 때에는 「문화산업진흥 기본법」 제58조의3에 따라 양도인이 받은 행정처분의 효과가 양수인에게 승계되어 가중처분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을 확인합니다.

년 월 일

양도인 생년월일:

성 명:

(서명 또는 인)

양수인 생년월일:

성 명:

(서명 또는 인)

210mm×297mm[백상지(80g/㎡) 또는 중질지(80g/㎡)]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5조(방송영상독립제작사의 신고 등) ① ~ ⑤ (생략) <u><신설></u>	제5조(방송영상독립제작사의 신고 등) ① ~ ⑤ (현행과 같음) ⑥ 영 제12조의3의제1항에 따른 <u>방송영상독립제작사 지위승계 신고서는 별지 제2호의5서식과 같다.</u> <u><삭제></u>
제5조의2(품질인증기관의 지정신청) ① 영 제15조제2항에 따라 <u>문화상품의 품질인증기관으로</u> <u>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의5서식의 문화상품 품질인증기관 지정신청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(이하 “시·도지사”라 한다)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영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법인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.</u> 1. <u>별표 1에 따라 작성한 기관 현황 및 문화상품 품질인증 사업계획서 1부</u> 2. <u>품질인증과 관련된 실적 또는 유사한 업무 경험을 증명</u>	

하는 서류와 그 수행기간을
증명하는 서류 각 1부

3. 품질인증과 관련되거나 유사
한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
력이 있는 전문 인력의 보유
현황을 적은 서류 1부

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
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시·
도지사는 「전자정부법」 제36
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
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
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. 다
만, 법 제31조에 따른 한국콘텐
츠진흥원(이하 “콘텐츠진흥원”
이라 한다)의 경우에는 그러하
지 아니하다.

제11조의5(일시 납부 등에 따른
기술료 감면) 문화체육관광부장
관은 영 제25조의3제3항 후단에
따라 기술개발사업실시기관이
기술료를 한꺼번에 내거나 분할
납부 기한보다 일찍 낼 때에는
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기술
료를 감면할 수 있다.

1. 기술료의 1회차 납부 예정일
(협약에 따라 기술료를 내기

제11조의5(일시 납부 등에 따른
기술료 감면) -----

--- 영 제25조의3제2항에 따라
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-----

-----.

1. -----

로 한 날을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<u>같다</u>)부터 1년 이내에 <u>기술료</u> 전액을 한꺼번에 내는 경우: 기술료 전액의 100분의 30 감면 2. 기술료의 1회차 납부 예정일 에 해당 기술료를 내고 1회차 납부 예정일부터 1년 초과 2 년 이내의 기간에 기술료 <u>잔</u> <u>액</u>을 한꺼번에 내는 경우: 기 술료 잔액의 100분의 20 감면	----- ---- <u>같다</u>) 이전에 기술료 등 <u>의</u> ----- ----- ----- 2. ----- ----- ----- ----- 등 <u>의 잔액을</u> ----- -----
--	--